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1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신성범・박정하・인요한

서일준 · 김용태 · 김장겸

이성권 · 최수진 · 윤상현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 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 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 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정년 등) 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63 세, 2029년부터 2030년까지는 64세, 2031년 이후에는 65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4(정년 등) ① 연구기관
	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
	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
	<u>시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u>로 정한다.</u>